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12. 12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12. 19

라. 상정일자 : 1995. 12. 20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재무경제위원회 신설(95. 6. 19 조례제1357호)로 의사진행보좌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의회인력 증원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시의회 인력승인(95. 10. 31 내부부 지기 12200-830)으로 정원조정(의회사무국) (안 제2조)

- 현 행 : 23명
- 개 정 : 26명(3원 증원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-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
의결 년월일	95. 12. 20 (제4차)

제출년월일 : 95. 12. 12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재무경제위원회 신설(95. 6. 19 조례제1357호)로 의사진행 보좌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의회인력 증원

□ 주요골자

-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시의회 인력승인(95. 10. 31 내부부 지기 12200-830)으로 정원 조정(의회사무국) (안 제2조)
- 현 행 : 23명
 - 개 정 : 26명(3명 증원)
-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의회사무 직원의 정수 조정
- 현 행 : 23명
 - 개 정 : 26명(3명 증원)

□ 관계법령발췌서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의회사무국 · 26명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②(다른조례의 개정) 부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중 “23명”을 “26명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(정원의 총수)(생략) 1. (생략) 2. <u>의회사무국 : 23명</u> 3~6 (생략)	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(정원의 총수)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의회사무국 : 26명</u> 3~6 (현행과 같음)
부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(사무직원의 정수)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<u>23명</u> 으로 하며, 그 직급별 정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 규칙으로 한다.	부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(사무직원의 정수) _____ _____ <u>26명</u> _____ _____